

24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총평

이상 기온으로 더운날씨에 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생분들 다들 넘 고생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오는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착실히 준비하시고 노력한 과정은 반드시 결과에 나타날 것이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건강회복을 먼저 하시길 바라며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래 총평은 사건을 전제로 간단히 작성된 내용이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정답이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번 민사소송법은 작년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고, 보충송달은 연습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어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1]

물음 1)(2015년 기출과 유사한 사안. 사례연습 교재 252페이지 참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사안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양립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도입을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그 중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문제되는 경우로 접근하는게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양립불가능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유형(형태)를 간단히라도 언급한 후 후발형도 제68조의 준용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면 가점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물음 2)(불이익변경금지원칙 사안. 사례연습 교재 319페이지 참고)

출제가 예상된 논점으로 23년 변리사 기출과 유사한 사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30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일반론을 추가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소제기를 원고만 한 경우에 이심은 패소한 부분(3천만)뿐만 아니라 승소한 부분(7천만)도 이심되지만 심판대상은 불복부분인 패소한 부분(3천만)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이 긍정된 경우에는 제415조 단서에 의해 전부가 심판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소의 효력을 언급한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예외에 관한 논의를 해주시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점이 크게 나온 문제이므로 일반론을 언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 변론기일지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기일지정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첫째, 소송종료 후 그 종료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와 둘째, 소나 항소취하간주를 막기 위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결석으로 연습을 많이 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첫째의 경우도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규칙 제67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이 당사자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당사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항소심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도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대판 1996.12.20. 95다26773 사안을 언급하셨다면 득점사항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문제 3] 보충송달

보충송달이 가능한 경우는 제186조에 따라 근무장소 이외(주소 등)의 경우와 근무장소에서의 경우입니다.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인에 관한 요건, 사리를 분별할 지능에 관한 요건,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경우(예: 이혼사건)에는 부정된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은 위 요건외에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송달이 부정된다는 내용도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보충송달은 법률이 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우체국 창구 판례). 또한 효력발생은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한 때에 발생하고 본인에게 전달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 사안으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보충송달을 받는 것은 전달가능성이 없어 무효라고 본 대판 2021.3.11. 2020므11658을

언급하셨다면 득점사항에 유리하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충송달을 준비하지 못해 넘 죄송합니다. 연습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서 힘들 것을 생각하니 넘 죄송한 마음입니다.

화살은 이제 여러분들 손을 떠난 상태입니다. 준비하신 만큼 결과는 꼭 나올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합격 후에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므로 영어 공부나 독서 등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수업을 들어주신 수강생분들에게도 이 기회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정운 드림